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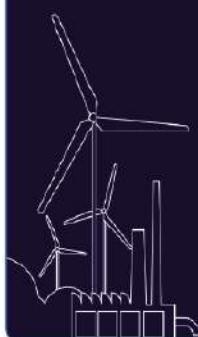
시행자 교육용

## 2023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절차 및 유의사항

2022. 7. 13(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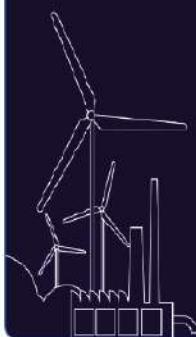
 전력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조미연

### CONTENTS



- I 최근 제도 개선 내용
- 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종류와 세부내용
- I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절차
- IV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
- V 부적합 사업유형

## CONTENTS



- I 최근 제도 개선 내용
- 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종류와 세부내용
- I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절차
- IV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
- V 부적합 사업유형

### 01

### 최근 제도개선 내용 (사업심의 횟수 축소 3회→2회)

#### 개정배경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(10월말)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나 사업계획 미제출 사례가 증가에 따라 사업 적기 추진 어려움



## 02

## 최근 제도개선 내용 (소득증대사업 의무 적용대상 완화)

### 개정배경

- 기본 특별 합산 지원금 2억원 이상인 지자체는 지원금의 30%를 소득증대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
-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소득증대사업은 **지원금이 적은 지자체에게 불리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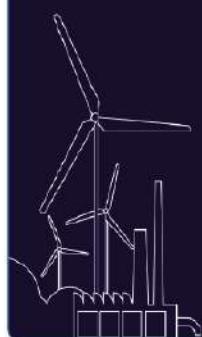
현 행

개 선

기본+특별 합산  
2억원 이상 지자체

기본 + 특별 합산  
5억원 이상 지자체

### CONTENTS



- I 최근 제도개선 내용
- 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종류와 세부내용
- I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절차
- IV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
- V 부적합 사업유형

## 사업종류

# 기본지원사업의 사업종류와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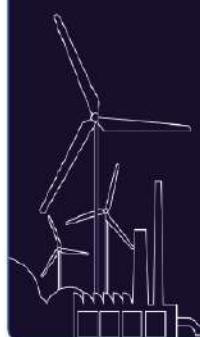
### 세부내용

### 조건

<b>소득증대사업</b>	농림수산산업시설, 상공업시설, 관광산업시설의 설치*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›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</li> <li>› 시설물의 재산관리, 수익금 관리 등 규정한 운영규칙 마련</li> </ul>
<b>공공사회복지</b>	<p>공공시설 <b>의료시설, 도로시설, 항만시설, 상하수도시설, 환경*위생시설, 방사능방재시설, 운동*오락시설 및 전기*통신시설 등을 건립*운영하는 사업</b></p> <p>사회복지 <b>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</b></p> <p>지원프로그램 운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› 사업시행 후 시설물을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</li> <li>›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진료*사회체육활동*평생교육 등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운영</li> <li>› 지자체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칙 마련</li> </ul>
<b>육영사업</b>	교육기자재 및 통학*숙식 지원, 학자금*장학금 지급 및 교육*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› 발전사, 원전지자체만 시행 가능</li> <li>› 기본지원금의 15~30% 범위 내에서 결정</li> <li>› 장학금 지급: 최소 실거주기간 요건 확인 철저</li> </ul>
<b>주민복지지원</b>	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주민건강진단비, 정보*통신비(TV수신료, 유선방송료,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)를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› 풍자사업, 해당지역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실시</li> <li>› 관내 소재 국내 금융기관과 융자금 대여악정 체결 및 운영</li> <li>› 주민복지 사업시행자별 기본지원사업의 20% 이내</li> </ul>
<b>기업유치지원</b>	기업의 유치 및 설립*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› 융자사업, 임대사업,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 실시</li> <li>› 지원대상, 지원절차, 지원한도, 지원기간 등 조례로 제정</li> </ul>
<b>전기요금보조</b>	<전기사업법>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전력 및 산업용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› 원전 또는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 발전소</li> <li>› 지원한도: 지원사업비의 40% 이내</li> </ul>
<b>그밖의지원</b>	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	지역문화진흥사업, 지역홍보(지역이미지제고) 등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## CONTENTS

- I 최근 제도 개선 내용
- 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종류와 세부내용
- I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절차
- IV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
- V 부적합 사업유형







## 2단계 수립지침 및 예산 사전통보

- ❖ 수립지침의 개정사항과 사전통보 된 예산 내용 확인 후 사업계획 수립
- ❖ 예산 확인 후 예산 사용계획이 없다면 지역담당자에게 공지 후 공문발송



-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
- 위원회 심의 → 산업부/전담기관 → 시행자

8월초



- 기금운영계획(정부안) 통보 (안내서 9월)

예산 확정 후



- 3월에 신청한 사업예산의 배분내역을 확인하셨나요?
- 발전소주변지역의 시행요령과 수립지침 내용에 대해 파악되어 있나요?
- 예산내역에 변동사항이 있으신가요? 있다면 지역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.



### 사업계획 수립 Process



## 3단계 사업계획 수립 제출

- ❖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을 10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
- ❖ 제출방법: 전담기관 홈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시스템([www.etepon.or.kr](http://www.etepon.or.kr)) 등록



- 사업계획 수립 제출 (시행자 → 전담기관)
- 주민의견수렴 및 지역위원회 심의

10월말

###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, 설명회, 공청회 등 적절한 주민참여 절차

필요시 홈페이지, 우편, FAX 통해 의견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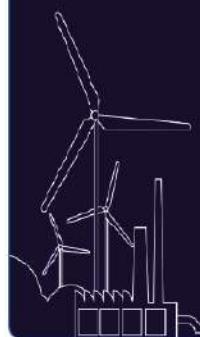


### 지역위원회 심의

- ▣ 기동\*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
- ▣ 기동\*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
- ▣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전소



## CONTENTS



- I 최근 제도 개선 내용**
- 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종류와 세부내용**
- I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절차**
- IV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**
- V 부적합 사업유형**

## 01

###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수립 유의사항

절차적 요소

#### 01 주민의견수렴과정 진행

발주법 시행요령 제5조(연간사업계획의 수립) 제9항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수립 전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

#### 02 지역위원회 개최 대상자

지역위원회 개최 시행자는 지역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을 홈페이지 공개 및 사업계획서류 제출시 증빙제출

#### 03 확정사업공개

지원사업계획의 계획, 선정기준, 선정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함

#### □ 2023 사업계획수립 사전 절차 이행 점검

○ 사전 절차 이행여부 체크표 \* 작성에서 (연수개정)

구 분	일 자	세부 내용	비 고
주민의견수렴 [설명회, 금정회, 전문가 의견 포럼]▶	22. 9. 10.	① 신 홈페이지 개편 개시 및 의견수렴▶ ② 주민설명회 개최▶ ③ 주관 : 00시 00분▶ ④ 장소 : 00시 회의실▶ ⑤ 참석인원 : 00명▶ ⑥ 개최장소 : 사업 item 수립 및 선호사업 의견 청취▶	▶
주민의견수렴 [설명회, 금정회, 전문가 의견 포럼]▶	22. 9. 20.	① 주민설명회 개최▶ ② 주관 : 00시 00분▶ ③ 장소 : 00시 회의실▶ ④ 참석인원 : 00명▶ ⑤ 개최장소 : 사업 item 수립 및 선호사업 의견 청취▶	2회이상 개최시 추가작성▶
주민의견수렴 [설명회, 금정회, 전문가 의견 포럼]▶	22. 9. 25.	① 주민설명회 개최▶ ② 주관 : 00시 00분▶ ③ 장소 : 00시 민원센터▶ ④ 참석인원 : 00명▶ ⑤ 개최장소 : 의견 수렴 및 세부사항 수정▶	▶
지역상의위원회 [운영]▶	22. 10. 6.	① 지역상의위원회 운영(예) 현황▶ ② 장소 : 00시 회의실▶ ③ 참석인원 : 00명(예정)▶ ④ 실무자 : 사업개최(안) 확정▶	지역상의위원회 운영시 작성▶
지역상의위원회 [운영]▶	22. 10. 8.	① 지역상의위원회 회의록 공개▶ ② 방법 : 00시 인터넷 개시, 관보별첨▶ ③ 개시기간 : 21. 10. 8▶ ④ 내용 : 회의록 내용 및 실의현황▶	▶
착장 사업계획(안) 증명▶	23. 12월 말▶	① 사업계획(안) 즐개 현황▶ ② 방법 : 00시 인터넷 개시, 관보별첨▶ ③ 개시기간 : 21. 10.25▶ ④ 내용 : 지원사업(안) 내용 및 주간별정 등▶	▶
기타사항▶	21. 11. 7.	① 일부 주변지역 주민 이의제기▶ ② 주민 설득으로 원만히 해결▶	해당사항 있을시 작성필수▶

02

##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수립 유의사항

### 형식적 요소

- ## 01 사업계획서, 시설 운영계획서 직인, 서식 모두 작성

- ## 02 사업명, 지원사업비 산출내역 최대한 구체적으로

- ### 03 전담기관 홈페이지 미입력 시 심의대상 제외

03

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수립 유의사항

-증정서류-

▶ 물풀구인

- 단가 50만원 이상 구입 시 '나리장터' 가격정보 첨부
  - '나리장터' 가격정보 없을 시 기타 경력서 제출

→ 투자매입

- (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)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류

### → 공사관련

- 지원사업비 산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**공사비산출내역서**

- 유통사업

자하그

- 최소 실거주기간 요건 확인
  - 장학금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

### ▣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

- 지급대상자 투명한 선정
  - 선정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



-주민복지

## → 지워학도

- 시행자별 기본지원금의 20% 이내
  - 단, 연간 기본지원금이 1억원 이하  
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

### ▣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

- 세대별 현금지원에 따른 증빙서류  
징구,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대별  
지원금액이 과다하지 않게 유의

부정수급 방지  
투명하게 집행

## 04

#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수립 유의사항

시설물 관리

### 01 시설물의 관리 (발주법 시행규칙 제5조)

지원금으로 설치(구입)한 시설물 및 장비 사업 등에 표시  
설치장소: 알아보기 쉬운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

### 02 시설물의 소유와 관리는 시행자가 이행

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와 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이행 취득  
및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

### 03 시설물 소유와 관리 이관

지자체장이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단체에게 이관 시 해당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 마련, 지자체장이 운영에 참여, 소유의 변동관계 파악

[별표] <개정 2011.12.29.>

####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(제5조 관련)

1. 표시 내용: 영 제19조,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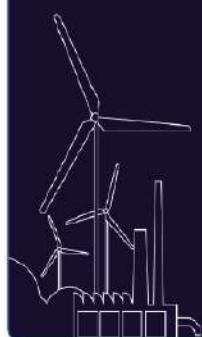
[예] 이 ○○○은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금으로 설치(구입)된 것입니다.

년 월 일

2. 표시 규격: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로 40센티미터,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고,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한다.

3. 설치 장소: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하고,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.

## CONTENTS



- I 최근 제도 개선 내용
- 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종류와 세부내용
- I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절차
- IV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
- V 부적합 사업유형

## 01 부적합 사업유형

지원사업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며, 개인별 세대별 지원은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외는 불인정

### 개별지원 가능

#### ▣ 주민복지지원사업

- 주민건강진단비, TV수신료, 유선방송료, 인터넷비
- 주택용전기요금(전기요금보조사업과 중복불가)

#### ▣ 육영사업 중 장학금 지급

#### ▣ 전기요금보조사업

- 발전사, 한전간 협의 후 감면된 고지서 발행하여 시행

주민복지지원사업, 육영사업, 전기요금보조  
개별지원 가능

### 개별지원 불가

- ▣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
- ▣ 재해피해가구 긴급사회복지지원
- ▣ 보훈유공자 차량지원
- ▣ 위기가정 온누리상품권 지급
- ▣ 소외(취약)계층을 위한 김장, 반찬나누기행사
- ▣ 아파트 옥상방수, 도색, 엘리베이터 교체

특정개인(단체) 지원사업 지양



## 02 부적합 사업유형

주민화합행사 등 행사성일회성선심성 사업의 관행적 추진은 지양

### 행사성일회성선심성 사업 예시

- ○○ 수제맥주 축제 행사 지원
- ○○ 지역 페스티벌 지원
- ○○ 항 수산물 축제 지원
- ○○ 읍 종량제 봉투 구입 지원
- ○○ 운영자 /마을리더 선진지 견학



## 03

### 부적합 사업유형

- **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**

-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, 물품 구입
- 청사리모델링 및 신축사업, 도로 차선 도색, 도로 보도블록 교체 등

- **부동산 투자사업**

- 사업시행자가 토지, 건물을 매입하여 단순 임대하는 사업 → 소득증대사업 범주에 속하지 않음

- **캐릭터, 입간판, 마을 상징물 등 각종 조형물**

- 관내 마을 이정표 설치사업
- ○○시 캐릭터 설치사업
- ○○ 읍 ○○ 리 마을 표지석 설치



## Q & A

